

憲法修正案提案說明書

1987. 10. 12.

憲法修正案提案說明書

지난 39年間の 길지않은 우리 憲政史에 있어서 그동안 8차례에 걸쳐 點綴되어 온 執權延長手段이나 政治的 變革에 따라 이루어진 改憲과는 달리 國民의 輿望에 부응하는 憲法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政治史에 처음으로 與野合意에 의해 發議·提案된 第9次 憲法修正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議員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憲法修正案은 第12代國會議員 總選後 提起된 改憲問題에 관한 與野間의 葛藤과 對立을 止揚하고 政局의 安定을 위하여 國民各界各層의 意見을 收斂하여 國民의 輿望에 따른 與野 合意에 의한 憲法修正案을 마련하고자 지난 1986年 6月 24日 本會議 決議에 의하여 構成된 國會憲法 改正特別委員會에서, 그동안 各 政黨間에 이루어진 改憲要綱에 관한 合意內容을 土臺로 하여 起草·成案한 憲法修正案을 지난 9月 18日 與野議員 거의 모두인 民主正義黨의 李大淳議員, 統一民主黨의 金鉉圭議員, 新韓民主黨의 鄭在原議員, 한국국민당의 梁正圭議員 外 260人이 現行

憲法 第 129 條第 1 項에 의거 發議 提案하여 지난 9 月 21 日 大統領에 의해 公告되고 20 日 이상의 公告期間을 거쳐 國會議決 節次를 밝기 위하여 오늘 國會本會議에 上程된 것입니다.

지난 第 12 代 國會議員 總選 이후 우리 社會는 改憲 問題를 둘러싸고 與野間의 不信과 葛藤 그리고 尖銳化한 政治的 對立으로 심한 國論分裂과 社會的 混亂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國民大和合을 이룩하여 우리 歷史上 처음으로 與·野 合意에 의한 大統領 直選制의 憲法修正案을 提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與·野議員은 지난 39 年間 겪은 憲政史的 教訓을 거울삼고 우리 國民의 創意와 勤勉으로 이룩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꾸준히 變化·成熟되어 온 國民의 民主力量과 多樣화된 民意를 폭넓게 受容하여 大韓民國 憲政史의 새로운 章을 여는 合意改憲案을 提案함으로써, 國民 모두의 同意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自由民主主義 理念과 體制를 더욱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祖國의 平和統一基盤을 공고히 하여 세계속에 雄飛하는 2 千年代의 새 歷史 創造에 획기적인 계기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憲法修正案을 마련한 動機이며 趣旨인 것입니다.

冒頭에서 잠시 言及한 바와같이 이 憲法改正案은 與·野 各政黨間에 合意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國會 내의 모든 交涉團體가 참여한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起草·成案한 것을 그대로 提案하는 등 國民的 合意를 導出하는데 필요한 모든 節次를 거친 것이며 참다운 民主化時代의 展開를 향한 國民的 興望과 政治人의 時代的 使命이 함께 담긴 것으로써 이 憲法改正案의 改憲方向은 다음 네가지의 基本原則 아래서 마련한 것입니다.

첫째, 大統領直選制의 採擇으로 國民의 自由로운 選舉에 의한 政府選擇을 보장함과 아울러, 大統領單任制에 의한 平和的 政權交替의 傳統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民主國家發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大統領의 非常措置權·國會解散權의 폐지를 통하여 大統領의 權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國政監査權을 부활하는 등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의 權限을 강화하여 그 機能을 활성화함으로써 國家權力의 均衡과 調和를 도모하고, 法官의 任命節次 개선과 憲法裁判所의 新設등을 통하여 司法權의 獨立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憲法의 實效性을 提高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拘束適否審査請求權의 전면보장, 刑事補償制度의 확

대, 犯罪被害者에 대한 國家救助制 新設등 國民의 身體와 生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言論·出版·集會·結社에 대한 許可·檢閱의 금지등 表現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며, 勞動 3 權의 실질적 보장과 最低賃金制의 실시등 勤勞者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확충하여 基本的人權을 대폭 伸張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經濟秩序에 있어서 自由經濟體制의 原理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所得의 分配, 地域經濟의 均衡발전, 中小企業과 農·漁民 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의 福利를 증진시키고 國民生活의 基本적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改憲의 基本方向과 原則 아래 마련된 이 憲法改正案의 主要改正事項別 改正理由와 改正內容을 說明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憲法 前文 및 總綱에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法統과 4.19 民主理念의 繼承을 明示하고, 國家의 在外國民 保護義務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의 樹立·推進 規定, 그리고 軍의 政治的 中立性 規定을 新設하였습니다.

그 具體的 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前文에 民族自主精神과 民主主義理念의 結晶體이자 우리나라 近代的 政府建立의 精神的 礎石이라 할 수 있는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의 繼承을 明示함으로써 日帝支配로 인한 民族史의 斷切을 連結시켜 國家의 正統性을 회복하도록 하였고, 또한 民主憲政을 守護하기 위한 國民的 抵抗權問題에 관해서는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을 繼承토록 함으로써 그 精神을 反映하였으며, 다음 總綱에서는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의 浮上과 함께 增加一路에 있는 海外僑民을 積極的으로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案第 2 條 2 項에 國家의 在外國民保護義務規定을 新設하였고, 分斷된 祖國의 現實을 勘案, 民族統一이 至上課題임을 認識하여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樹立·推進”하도록 案 第 4 條를 新設하였으며, 또한 ~~支民政治의 實現과~~ 軍의 政治^{조각}~~介入~~ 禁止問題에 관해서는 案第 5 條 2 項後段에 國軍의 “政治的 中立性은 遵守된다”라고 規定, 그 趣旨를 反映하였고, 또한 政黨條項에 관해서는 政黨의 組織·活動과 함께 그 設立目的도 民主的이어야 한다는 뜻을 明示

하였으며, 한편 그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경우에는 그 解散을 憲法裁判所에 提訴할 수 있도록 案第 8 條에 反映하였습니다.

둘째로 國民의 權利意識이 고양되고 國民經濟生活이 크게 向上된 現實에 맞추어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最大限으로 伸張토록 國民의 基本權條項을 대폭 補完하였습니다. 그 具體的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身體의 自由를 規定하고 있는 案第 12 條에 있어서는 國家權力의 濫用으로 인한 身體의 自由侵害를 防止하고 實質的인 基本權實現을 위하여 處罰과 保安處分 및 強制勞役을 받을 要件에 適法한 節次에 의할 것을 追加하였고, 令狀制度에 있어서도 適法한 節次에 따라 發付된 令狀을 提示하도록 하였으며, 逮捕·拘束의 理由와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과 아울러 逮捕·拘束된 者의 家族등에도 그 內容을 通知하도록 規定하여 刑事被疑者등이 有利한 證據提示 其他 防禦權을 行使할 수 있는 機會를 주도록 하였고, 한사람의 國民이라도 억울하게 逮捕·拘束되는 일이 없도록 拘束適否審査請求權을 모든

拘束者에 認定하고 對象犯罪에도 아무런 制限을 두지 아니하도록 憲法上 保障하였습니다.

다음 國民의 政治的 意思表現의 權利인 言論·出版 및 集會·結社의 自由를 最大限으로 伸張하고 國家權力에 의한 侵害事例가 없도록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 및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認定되지 않는다는 것을 案 第 21 條第 2 項에 新設 明文化하였으며, 다만 表現의 自由의 重要性和 通信·放送·新聞등 言論媒體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일정한 施設基準을 정하는 것은 不可避하다는 前提아래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保障을 위해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정할 수 있도록 同條第 3 項에 新設規定하였습니다.

다음, 財產權의 保障에서는 오늘날 大規模 公益事業등으로 인하여 國民의 財產權이 制限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 現行 憲法에서는 公益을 強調함으로써 國民의 財產權保障이 未洽한 點을 勘案하여 國民의 財產權의 收用·使用 및 制限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하도록 案 第 23 條에 規定하였습니다.

다음, 國民의 選舉權年齡問題에 있어서는 案 第 24 條에서 ~~選舉年齡의 引下와 關係하여 與野가 合意한 精神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選舉權年齡은 法律에 委任하였고, 國民의 請求權的 基本權에 있어서는, 刑事被害者는 當該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는 權利를 案 第 27 條 第 5 項에 新設하였으며, 刑事補償請求에 있어서도 無罪判決을 받은 때를 包含하여 法律이 定하는 不起訴處分을 받은 때에도 補償請求가 可能하도록 案 第 28 條에 擴大規定하였고, 他人의 犯罪로 生命·身體에 被害를 받은 者는 國家로 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도록 案 第 30 條에 新設하였습니다.

다음, 社會權的 基本權에 있어서는 大學의 自律性保障을 教育을 받을 權利規定에 追加하였고, 지금까지의 우리 經濟成長은 勤勞者의 노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勤勞者의 生存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勤勞福祉의 最大課題라 할 수 있는 最低賃金制의 實施를 案 第 32 條 第 1 項에 歷代憲法上 처음으로 新設 明文化 하였으며, 특히 女性勤勞者가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不當한 差別을 받지 않도록 規定을 新設하여 雇傭등의 分野에 있어서 實質的인 男女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案 第 33

條第 1 項에서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에 대한 法律留保條項을 削除함으로써 勤勞者의 勞動 3 權이 確實하게 保障되도록 하였으며, 現行 憲法上 國公營企業體·防衛產業體等 國民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業體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에 의하여 制限되고 있으나, 勤勞者의 團體交涉力向上에 있어 團體行動權의 保障이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勘案하여 團體行動權制限對象을 縮小하고자 案 第 33 條第 3 項에서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產業體에서 從事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만을 制限할 수 있도록 하였고,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보다 積極的으로 保障하기 위하여 그 內容과 對象을 擴大하였는 바, 女子와 老人·靑少年에 대한 國家의 保護規定을 案 第 34 條에 新設 내지 補完하였으며, 이와 함께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할 義務規定을 新設하였고, 環境權과 관련하여 國家의 住宅開發努力義務와 婚姻·家族·保健에 관한 權利에 母性保護規定을 새로히 追加하였습니다.

세째로, 國會의 機能活性化와 地位向上을 위하여 國會의 權限을 強化하였습니다.

즉 國會運營의 活性化와 少數者保護를 위해 國會臨時會 召集要求 定足數를 在籍議員 4分の1 이상으로 완화하고, 定期會에 있어서 豫算案·決算등 國政審議의 內實化를 기할 수 있도록 定期會의 會期를 100日로 연장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趣旨에서 國會의 年間 開會日數制限規定을 削除하여 開會日數에 制限없이 國會가 開會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行政府에 대한 效率的인 감시·비판기능을 遂行토록 하기 위하여 國政監査權을 復活함과 同時에 現行的 國政調查權을 함께 規定함으로써 國政監査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國政調查는 特定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必要한 경우 調查할 수 있도록 그 概念을 整理하여 案第 61條에 規定하였고, 現행 憲法의 의원내각제적요소를 排除하고 行政府와의 權力均衡을 이루도록 國會의 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議決權을 解任建議權으로 變更하여 案第 63條에 規定하였습니다.

네째로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하고, 長期執權防止裝置를 마련하였으며, 大統領의 權限을 縮小調整하였습니다.

政府形態는 大統領中心制의 現行制度를 유지하면서 大統領 直選의 國民的合意를 받아들여 案 第 67 條에서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해 選出하도록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하였고, 大統領被選舉權者의 要件중 5 年이상 계속 國內居住要件을 削除하였으며, 大統領 任期滿了時 後任者選舉는 任期滿了 70 日내지 40 日前에, 闕位된 때는 60 日 이내에 選舉를 하도록 規定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憲政史의 悲劇은 大統領의 長期執權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고 平和的 政府移讓을 保障함은 물론 인기영합적 政策을 豫防하고 소신있는 國政遂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의 任期를 5 年 單任으로 規定한 外에 大統領의 權限을 縮小하여 權威主義的 體制로의 變質을 豫防하는데 力點을 두었습니다.

즉, 現行憲法上 大統領에게 부여되어 있는 非常措置權은 發動要件을 엄격하게 制限하여도 政治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削除하고 그 대신에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緊急財政經濟處分과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도록 하고, 國家安危에 관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 할때에 한하여 法律

의 效力을 갖는 緊急命令을 發할 수 있도록 하는 緊急 財政經濟處分·命令制度와 緊急命令制度를 案 第 76 條에 新 設하였으며,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과 緊急命令은 國會에 報告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 면 그때부터 그 命令은 失效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大統領의 權限중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을 削除하였으며, 大統領의 諮問機關으로 國家元 老諮問會議·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國民經濟諮問會議를 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司法權獨立의 保障과 관련하여 大法官任命節次를 改善하여 大法官의 任命에 民意를 反映함으로써 그 身分을 強化하기 위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도록 하였으며.

司法府의 自律성과 人事의 公正성을 기하기 위하여 一般法官의 任命에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도록 案第 104 條에 規定하였고, 大法院長의 任期를 6 年으로 연장하며, 大法官의 任期는 6 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裁判의 獨立성과 法官의 身分保障을 위하여 法官은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해서만 罷免되도록 하였고

軍事裁判을 管轄하는 特別法院으로서의 軍法會議의 名稱을 軍事法院으로 變更함과 아울러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의 單審制範圍에 人權尊重의 側面에서 死刑을 宣告한 경우는 除外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憲法委員會를 廢止하고 案第 111 條 내지 第 113 條에 憲法裁判所를 獨立機關으로 新設하여 憲法解釋의 一貫성과 繼續性を 유지하는 한편 司法府의 政治化를 豫防토록 하였습니다.

憲法裁判所의 管掌事項으로서는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彈劾審判, 政黨解散審判, 國家機關相互間 등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그리고 國家權力에 의하여 個人的 基本權이 침해되는 경우 基本權의 保障과 貫徹을 위하여 國民個個人的 特別한 權利救濟手段인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任期 6 年の 裁判官은 法官의 資格을 가진者 중에서 9 人을 大統領이 任命하되 3 人은 國會에서 選出하고 3 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토록 하였고,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裁判官 6 人이상의 贊成을 요하도록 그 審判要件을 엄격히 하였으며, 裁判官의 身分保障과 憲法裁判所의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制定權을

規定하였습니다.

일곱째, 選舉管理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의 任期를 6年으로 延長하였고, 委員의 罷免要件을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로 하여 그 身分을 保障하였으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制定權을 부여하였습니다.

여덟째, 憲法上 經濟條項에 있어서는 自由市場經濟原理를 根幹으로 하면서 그동안 産業社會에서 야기되는 階層間·産業間·地域間的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하여 必要한 規制와 調整 그리고 國家의 努力을 強調하는 內容으로 補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經濟秩序에 관한 原則規定인 案第 119 條에서는 國家는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과 適正한 所得分配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市場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防止토록 하며, 經濟主體間的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이루기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도록 現行 規定을 補完하였고,

案第 121 條의 農地制度에 관하여는 耕者有田의 原則 達成과 小作制度의 禁止를 宣言하고 아울러 例外的으로 認定되는 農地의 賃貸借나 委託經營의 認定 要件을 엄격히

하였으며, 國土의 利用·開發을 위한 制限規定인 案第 122 條에서는 國土가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本임을 明示하였습니다.

또한 案第 123 條에서는 農漁業保護·育成을 위하여 國家는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支援計劃을 樹立·施行토록 하고, 地域間 均衡經濟의 達成과 農水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해, 需給均衡과 流通構造改善에 國家가 努力하도록 條項을 新設 明示하였으며, 案第 127 條에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開發을 위한 國家的 努力을 明文化 하였습니다.

끝으로 改正憲法의 施行과 有關한 附則條項에 있어서는 이 憲法의 施行日을 現行憲法에 의한 大統領의 任期가 終了하는 날의 다음날인 1988年 2月 25日로 함과 아울러 이 憲法施行에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施行에 有關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 施行日로부터 開始하도록 하였으며,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總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하고, 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에 終了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그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하고, 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 및 이 憲法施行 당시의 一般法官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아울러 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최초로 選任된 公務員부터 適用하도록 하였으며,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 그 職務를 행하도록 規定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憲法改正案의 改正趣旨와 그 內容을 說明 드렸음니다마는 이 說明에서 言及되지 아니한 部分은 대부분 現行憲法의 內容이 改正案에 그대로 受容되어 있으며

간단한 一部條項 및 字句의 改正內容은 여러 議員님들
에게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64 人의 與野議員께서 共同發議提案한 이
歷史的인 合意改憲案을 여러 議員님들의 절대적인 贊成으
로 可決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憲法改正案의 提案
趣旨說明을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